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가단102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김준영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륵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주현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D 사이에 2023.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D 사이에 2023.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42,733,20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1,366,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가단121361 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D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D과 피고들이 D을 제외한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D 사이에 2023. 2. 9.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원물반환은 각종 등기절차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물반환 이후 원고의 채권회수 절차에도 다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고들과 D 사이에 2023. 2. 9.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인 242,733,20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121,366,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23. 5. 4. 서울가정법원에 2023누단5303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5. 2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D은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D이 무자력 상태임에도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것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상속포기 자체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따라 법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상속포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신성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4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99.60㎡

2층 452.88㎡

3층 내지 24층 각 546.7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2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F 대 346,570.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46570.4분의 37.9669. 끝.

1) 원고는, D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D이 망인의 사망 이후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것은 을 제1호증의 기재 자체로도 명백하고, 달리 D의 상속포기의 신고 및 그 수리심판이 유효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